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선정단체(연극)

Q & A

1. 지원조건

Q. 실업급여를 받는 인력도 지원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의 근무 시작인 7월 전까지 받으시는 건 괜찮으나, 사업시작 **7월부터 중복으로 받으시는 건 불가합니다.**

Q.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불가라고 되어있는데 인력비 지원받는 사업은 다 안 되나요? 정확히 어떤 사업들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타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형태가 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 필수)일 경우를 말합니다.**
예술인력이 타 단체에 4대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받는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가능여부를 안내드리고자 하니,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를 가진 예술인력(대표자)도 채용 가능한가요?

A. 사업자를 가진 예술인력도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채용 가능합니다.

Q. 2020년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인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A.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5개 장르 포함)]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 재고용은 불가합니다.** 단, 89일 이하로 참여했거나,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부활동으로 사례비 혹은 일회성 급여를 받는 경우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본 사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술인력들의 외부활동이 일부 허용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사례비(사업소득, 기타소득) 취득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근무 외 개인적인 활동은 소속 단체와의 협의 하에 본 사업 근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공연할 작품을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A. 지원신청서에 제출해 주셨던 예술활동계획(안)이 심의를 통해 선정된 것이기에, 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기존 활동 계획의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협회의 승인 후 가능합니다. 협회로 사전 문의 후 변경 진행 부탁드립니다.

2. 채용공고

Q. 인력모집공고를 반드시 게시해야 하나요?

A. 본 사업의 인력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공정한 인력 채용을 위해 **최소 10일 이상 (주말 제외) 인력채용공고**는 필수입니다.

Q. 장애예술인력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음 공고에 게시되었던 것처럼 **장애예술인력 채용 불가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채용후보자 선발 시 꼭 모집인원의 2배수로 선발해야 하나요?

A. 예술인력 적격심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결원에 대비한 것이므로, 채용후보자 선발 시 **가급적 2배수로 선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체 배정 예술인력이 3명인 경우, 후보자 포함 1위~6위까지 작성 가능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사유와 함께 후보자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Q. 서류제출 시 선발심사적격자 이외에 모든 채용후보자 서류까지 취합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선발심사 적격자 인원의 필수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협회의 심사 후 최종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차기 후보자의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Q. 1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우에도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개인 1인 프로젝트에 본인이 예술인력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 필수 제출서류 중 예술인력 심사표는 생략 가능하며,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단, 대표 본인 외 다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 정확한 채용공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최소 10일(주말 제외) 이상의 공고 이후, 채용후보자 심사 및 선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용후보자 선발 완료 후 필수서류를 6.22(화)까지 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장애예술인력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음 공고에 게시되었던 것처럼 장애예술인력 채용 불가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인력공고 시 나이제한, 전공 혹은 예술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나요?

A. 나이제한은 없으나, 대학생은 지원 불가 합니다. 전공에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이 참여 가능 합니다.

3. 근태관리

Q. 근태관리 사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근태관리는 **어플(시프티)로 진행될** 예정이며, 인력채용 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Q. 예술인력의 근태 관리 감독은 누가하나요?

A. 협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근태관리 기록을 위해, 근태관리시스템 어플(시프티)을 통한 출·퇴근 및 매월 소정근로시간 체크 등을 관리해드릴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예술현장에서 인력들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각 단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선발한 예술인력이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

A. **인력교체는 가능하나, 협회의 사전승인 진행 후 가능합니다.**
협회의 사전승인 후에는 인력채용 공고부터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근무지설정은 사업 중간에 변경가능 한가요?

A. 근태관리시스템 어플(시프티)에서 근무지변경 사유를 작성해 요청해주시면 협회 승인 후 가능합니다. 단, **기본근무지는 반드시 한 곳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Q. 대관한 연습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연습실인데 상관없나요?

A. 네, 가능합니다

4. 선택적 근로시간제

Q. 월마다 총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매월 총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예술인력에게 매달 공지 될 예정입니다.

Q. 출·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A. 네, 출·퇴근시간은 예술인력의 근무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주 근무지 외 장소에서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해주시면 협회 승인 후 가능합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승인 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Q. 장애인도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A. 중증장애인일 경우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일지를 작성해주시되, 기존 장애인력 소정근로시간과 똑같이 적용되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5. 급여

Q. 총 근로시간이 작은 달에는 인건비가 조정되나요?

A. 월급 개념으로 급여가 책정되므로,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기본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추가근무나 휴일근무 시, 따로 추가수당은 없나요?

A. 추가근무나 휴일근무 시, **별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대신 근무시간만큼의 보상휴가가 주어지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Q. 작품의 홍보물이나 영상물을 올릴 경우 사전에 협회 측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협회의 별도 승인은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 저작권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협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 결과보고서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꼭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야 하나요?

A. **결과보고서 양식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공연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영상, 리서치 자료 등)를 필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